제2799호 2021. 1. 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 자치법규

[조 례]

제153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15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153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154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1541호 :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154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규 칙]	
제731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2
제73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약제, 수집 완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정규칙 …	4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_						
공람						



제2799호 49-2 2021. 1. 4.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가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37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

강

제2799호 49-3 2021. 1. 4.

-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2. 서울특별시 중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점검 및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
-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99호 49-4 2021. 1. 4.

신·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혖 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 제6조(기금의 용도) -----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 <u>사 · 연구</u> 사업 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보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 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한 긴급 점검 ·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 수 당 및 경비 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 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비훈력 설치 및 보수 · 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단, 유 지관리 제외)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 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

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

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제2799호 49-5 2021. 1. 4.

형 햇

개 정 안

경비

자.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 인 제거 및 시설물(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 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보 수·보강, 철거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 설의 보수·보강
- 3.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u>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u> <u>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u>
 - <u>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u> 측시설
- 4. 재난피해시설(서울특별시 중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한함)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 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u>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u> 급조치
 - <u>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u> 업
 - 다. 제설용 자재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 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비 제외) 및 임차
 - 라.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

<u>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u>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2. 서울특별시 중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 · 점검 및 보수 · 보강에 드는 비용
-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9. < 삭 제 >

제2799호 49-6 2021. 1. 4.

현 행	개
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	
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치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	
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진단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	
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99호 49-7 2021. 1. 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2020. 4. 8.) 취지에 따라 공공분야 기금 사용용도의 세부 항목을 정비하고,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사용 용도에 추가

2. 주요내용

- 가.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대한 세부항목 정비(제6조제1호)
- 나.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조항 신설(제6조제2호)

제2799호 49-8 2021. 1. 4.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양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38호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연혁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개정연혁표 3]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5의 4번지를 충무로4가에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번조서는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

별표1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예관동 → 충무로4가

변경전		변경후		7] 📮	대경(₂)	비고
동명	지번	동명	지번	지목	면적(m²)	n 1-7r
예관동	125-4	충무로4가	55-7	대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99호 49-9 2021. 1. 4.

<u>신·구 조문 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생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개정연혁표 3]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5의 4번지를 충무로4가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번조서는 별표 1의 제1호와
	다.
<u><신 설></u>	[별표1]
	1. 예관동 → 충무로4가
	변경전 변경후 -1.1 면적 1.11
	동명 지번 동명 지번 (m²)
	예관동 125- 충 무 예관동 4 로4가 55-7 대 2.9

제2799호 49-10 2021. 1. 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두 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진 세운 6-4-21구역 내 행정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 전 경계 조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구역의 개정연혁표3 추가
 -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5의 4번지를 충무로4가에 편입
- 나.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 추가

제2799호 49-11 2021. 1. 4.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석제, 수집 유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39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장치를 말한다.
-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설치)"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 및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으로 한다.) "로 하고, 제2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 등"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 등"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99호 49-12 2021. 1. 4.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채소류	고추씨, 고춧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숫대
호두밤땅콩도토라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과일류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어패류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O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감량기 , RFID 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O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O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

제2799호 49-13 2021. 1. 4.

<u>신·구 조문 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제2조(정의)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신 설>	7.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② (생 략)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3.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799호 49-14 2021. 1. 4.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 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 거용기의 설치,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설 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 한 보관시설 또는 <u>전용수거용기</u> 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전용 전용 수거용기 등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 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제2799호 49-15 2021. 1. 4.

② (생 략)

[별표 2]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조제1항 관련)

종 류 품목	배 출 요 령
류 -조리전·후음 한 식물짜가기 거 배 - 소 간 - 비'	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출 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 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날병뚜껑 · 패각류 ·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구 분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채소류	고추씨, 고춧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숫대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			
과일류	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어패류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 껍질	달걀 오리 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			
기타	대, 일화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기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끈, 돌, 의류, 비닐류 등			

-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O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감량기, RFID 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O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O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

제2799호 49-16 2021. 1. 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자치구 조례별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서울시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음식물류 페기물 분리수거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용어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가.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용어 정의 규정 신설 (제2조제7항)
- 나.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페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등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별표 2)

제2799호 49-17 2021. 1. 4.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양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0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 제2호 "복지환경국장"을 "시민친화국장"으로 한다. 별표 1(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종량제봉투 가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당시 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제2799호 49-18 2021. 1. 4.

[별표 1]

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

품목	세부품목	분리 배출 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가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 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 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 이 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제2799호 49-19 2021. 1. 4.

	·기타 종 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 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제2799호 49-20 2021. 1. 4.

5.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 출
6.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 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등
8.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제2799호 49-21 2021. 1. 4.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9.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 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10. 형광등, 건전지	· 막대형, 원형, 삼파장 전구, 컴팩트형, 안전내장형(백열등 제외)	-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 배출

제2799호 49-22 2021. 1. 4.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Ω⊋t	판 매 가 격 (원)	
용 량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3 L	8 0	9 0
5 L	1 2 0	1 3 0
10L	2 2 0	2 5 0
2 0 L	4 4 0	490
3 O L	6 6 0	7 4 0
5 O L	1,100	1,250
75L	1,650	1,880

○ 사업장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원)	
ö ö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5 0 L	1,800	2,000
7 5 L	2,700	3,000

2. 특수종량제 봉투

용 량	판 매 가 격 (원)	
ŏ ŏ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 0 L	1,840	2,040
5 O L	4,590	5,100

제2799호 49-23 2021. 1. 4.

<u>신·구 조문 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1	제48조(구성) 제3항 제2호 <u>시민친화국장</u>

-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 매 가 격	판 매 가 격 (원)	
용량	2015.10. 1. ~ 2 016.12.31.	2017. 1. 1. ~	
3 L	8 0	9 0	
5 L	1 2 0	1 3 0	
10L	2 2 0	2 5 0	
20L	4 4 0	4 9 0	
30L	660	7 4 0	
50L	1,100	1,250	
75L	1,650	1,880	
<u>100L</u>	2,220	2,500	

○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판 매 가 격 (원)	
<i>용</i>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50L	1,800	2,000
75L	2,700	3,000
<u>100L</u>	3,600	4,000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 매 가 격 (원)	
용량	2015.10. 1. ~ 20 16.12.31.	2017. 1. 1. ~
3 L	8 0	9 0
5 L	1 2 0	1 3 0
10L	2 2 0	250
20L	4 4 0	490
30L	660	7 4 0
50L	1,100	1,250
75L	1,650	1,880
<u>(삭제)</u>	(삭제)	<u>(삭제)</u>

○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용 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 16.12.31.	2017. 1. 1. ~
50L	1,800	2,000
75L	2,700	3,000
<u>(삭제)</u>	<u>(삭제)</u>	<u>(삭제)</u>

제2799호 49-24 2021. 1. 4.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

품목	세부품목	분리 배출 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 달력, 종이컵, 종이상자, 종이쇼핑백, 종이팩(우유팩 등)	종이는 깨끗한 상태로 모아서 묶기
캔, 고철, 유리병,	음료수캔, 맥주캔, 분유통, 약병(드링크병), 식품병,	내용물을 제거하고
플라스틱	페트병, 요구르트병, 식용유병	물로 헹군 후 배출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 받침접시 (코팅된 것 제외)	내용물 제거 후 묶어서 배출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가 된 라면, 과자 등 봉지류 및	이물질 제거 후
투명비닐	투명비닐 (오염된 것 제외)	따로 묶어서 배출
형광등, 건전지	막대형, 원형, 삼파장 전구, 컴팩트형, 안전내장형(백열등 제외)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 배출

별표 1 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

품목	세부품목	분리 배출 요령
古节	게구감박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 ", ", ", ", ", ", ", ", ", ", ",
. 7-1-17	7-1-1,1-1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
1.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
		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
		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
		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
		은 제거한 후 배출
	ਨ ੀਜ਼ਮੋ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
		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
		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 팩, 두유
		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
종이류		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
		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닠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
		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
		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GC 1 11 1 1 기원

제2799호 49-25 2021. 1. 4.

현 행		개 :	정 안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문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이물질을 넣지 않고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배출 - 작상별 용가가 설치되어 작사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가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제가한 후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들어간 유리제품, 반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4.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 품캔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앤, 통조림캔 등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기급적 통풍이 잘되 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

제2799호 49-26 2021. 1. 4.

현 행		개 :	정 안
	5.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 사, 못 등)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 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 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 있는 캔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 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 프탈레이 트 (PET) 병	·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 이트(PET)병(나머 지 폴리에틸렌테 레프탈레이트(PE T)병은 플라스틱 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 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 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PVC, PE, PP, P S, PSP 재질 등 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이 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8.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 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 명 봉투에 담아 배출

제2799호 49-27 2021. 1. 4.

현 행		개	 정 안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 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 재의 표면적이 50cm 이만, 내 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 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 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 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
	9.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판, 돗자리, 섬유류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기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베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10. 형광등, 건전지	·막대형, 원형, 삼파 장 전구, 컴팩트 형, 안전내장형(백 열등 제외)	

제2799호 49-28 2021. 1. 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나. 재활용품 혼합배출·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 폐페트병 별도배출 요일제 시행 관련 재활용품 품목을 조정하고 배출요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삭제
- 나. 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 개정
- 다.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미수정 사례 정비

제2799호 49-29 2021. 1. 4.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차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차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1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에 따른 수급자"를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납부의 무"를 "납부 의무"로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유족"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99호 49-30 2021. 1. 4.

<u>신·구 조문 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 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②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2799호 49-31 2021. 1. 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 조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년1회 이상 이행하여야 하는 정화조 청소에 대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의 감면 구체화(제1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2799호 49-32 2021. 1.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2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연가일수) ②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 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 직기간

제2799호 49-33 2021. 1. 4.

-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20조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 저축한다.

⑥ 삭제

제20조의 2(연가 당겨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연가 당겨쓰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 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가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제20조의 3(연가의 저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 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제2799호 49-34 2021. 1. 4.

-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21조(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12(개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 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 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제2799호 49-35 2021. 1. 4.

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 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제22조(병가)제1항에서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99호 49-36 2021. 1. 4.

<u>신·구 조문 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①(생략)	제18조(연가일수) ①(현행과 같음)
②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②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및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개정 2011.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
6.7)	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지 않은 공무원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신설 1997.04.11](개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정 2011.6.7)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8조의"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
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
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	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
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03.30,	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1997.04.11, 2011.6.7)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
	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③·④(생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③・④(현행과 같음)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제2799호 49-37 2021. 1. 4.

혀 했 개 정 안 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 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 · 저축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 ⑥ 삭제 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 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친족의 경조사에서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10.3 1, 개정 2010.12.29.) 제20조의 2(연가 당겨쓰기) <신 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 (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 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제2799호 49-38 2021. 1. 4.

현 행	개	정 안					
	제작기간 제작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사	l b					
	(년 이상	10					
<신 설>	제20조의 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기	시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					
	 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 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	 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					
	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						
	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					
	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	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어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박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1조(연가 일수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	①결근일수·정직 일수·작	시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					
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					
공세한다.(개정1996.03.30,2002.05.13, 2010.12.29)	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	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					
	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ㄸ	나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역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제2799호 49-39 2021. 1. 4.

현 행 개 정 안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 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반을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05.13, 개정 2011.6.7)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u><신 설></u>

-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 다.
-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 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

제2799호 49-40 2021. 1. 4.

현 행	개 정 안
	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
	수(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دا الم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
<u><신 설></u>	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
	를 뺀다.
③·④ (생략)	
9 9 (87)	
	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게?? z (Hzl) () 그런zlo	게 2 2 (년가)) 소 그렇지 않아 보 수 이 다 하는 이 기 수 이 기 하지 않아 하지 하지 않아 하지
제22조(병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제22조(병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
	에서 병사를 어지일 수 있다. 이 경우 실병이다 무성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자
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중시인근 경기달구에는 이글 신입이시 역되면다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99호 49-41 2021. 1. 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의 미비점 개선·보완

나. 연가 당겨쓰기 개선 및 연가 저축제 도입으로 연가 사용 활성화

2. 주요내용

- 가. 연가 당겨쓰기 개선
-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하던 연가 당겨쓰기의 사 유를 삭제하고, 재직기간별 다음 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나. 연가 저축제 도입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 축이 가능하도록 연가 저축제도 도입
 - 8시간미만 잔여 연가 자동 이월·저축

제2799호 49-42 2021. 1. 4.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양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31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판매이윤은 봉투가격의 6%로 한다."를 "판매이윤은 종량제 봉투 판매가의 9%로 한다."로 한다. 별표 2(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99호 49-43 2021. 1. 4.

[별표 2]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3 ℓ	90	5	90	8			
3 ℓ (재)	90	5	90	8			
5 ℓ	130	8	130	12			
10 ℓ (재)	250	15	250	23			
20 ℓ	490	29	490	44			
20 ℓ (재)	490	29	490	44			
30 ℓ	740	44	740	67			
50 ℓ	1,250	75	1,250	113			
75 ℓ	1,880	113	1,880	169			

○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단위: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 ਦ 	판매가	판매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50 ℓ	2,000	120	2,000	180			
75 ℓ	3,000	180	3,000	270			

2. 특수종량제봉투

(단위: 원)

7 14	2017. 1. 1. ~	~ 2020.12.31.	<u>2021. 1. 1. ∼</u>				
구 분	판매가	판메이윤	판매가	판매이윤			
20 ℓ	2,040	122	2,040	184			
50 ℓ	5,100	306	5,100	459			

제2799호 49-44 2021. 1. 4.

<u>신·구 조문 대비표</u>

		कृं		행			개 정 안 제10조(봉투판매 이윤) 조례 제24조 제 1항 및 제26조 제1항의 판매이윤은 종량제 봉투 판매가의 9%로 한다.									
200-1200-12	제26	조 제	항의	제2 4 3 판매이												
표 2 元	구격봉투	가격의	가성	내역(제	5조 관	련)	별표 2 규격봉투가격의 구성내역(제5조 관련)									
. 일반종 ○ 생활	·량제 홍 폐기물	충투 용 봉투			(단위	: 원)	1. 일반종 ○ 생활	·량제 통 폐기물용		(단위: 원						
	2015.	10, 1, ~	- 201	5, 12,31,	2017.	1, 1, ~		20	17, 1, 1,	~ 2020,	12,31.	2021	1, 1, ~			
구 분	판매가	수집	판매	반입수수로, 제작비 높	판매가	판매이윤	구 분	판매가	(삭제)	한매	(작제)	판매가	판매이온			
3 0	80	60	<u>5</u>	<u>15</u>	90	<u>5</u>	3 ℓ	90		<u>5</u>		90	8			
3 년 (제)	80	60	<u>5</u>	15	90	<u>5</u>	3 0 (利)	90		<u>5</u>		90	8			
5 ₽	120	79	7	34	130	8	5.0	130		8	1	130	12			
10 @	220	168	<u>13</u>	39	250	15	10년 (제)	250		15	1	250	23			
20 ₡	440	336	26	<u>78</u>	490	29	20 ₡	490	(삭제)	29	(삭제)	490	44			
20 년 (재)	440	336	26	<u>78</u>	490	29	20 🖟 (재)	490		29		490	44			
30 ℓ	660	503	40	117	740	44	30 €	740		44		740	<u>67</u>			
50 ℓ	1,100	838	<u>66</u>	196	1,250	<u>75</u>	50 €	1,250		75		1,250	113			
75 ℓ	1,650	1,254	99	297	1,880	113	75 €	1,880		113		1,880	169			
100 €	2,220	1,676	133	411	2,500	15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사업	장폐기	물용 봉	투		(단	위: 원)	ㅇ 사업	장폐기물	응봉.	Ę.			(단위: 원			
195 (42	2015.	10. 1.	- 201	6,12,31,	2017.	1, 1, ~	8 40	2017	1, 1,	~ 2020.	12,31	2021.	1, 1, ~			
구 분	판매가	소집 운박비	판매	설립수수로 제하면 등	판매가	판매	구분	판매가	(삭제)	판매	(삭제)	판매가	판매 이유			
50 €	1,800	669	108	1,023	2,000	120	50 ℓ	2,000	/11-01	120	(41×f)	2,000	180			
75 €	2,700	1,004	162	1,534	3,000	180	75 ℓ	3,000	(삭제)	180	(삭제)	3,000	270			
100 €	3,600	1,339	216	2,045	4,000	24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u>(작제)</u>	(삭제)			
. 특수종	량제봉	투			(단)	위: 원)	2. 특수경	량제봉	Ē		190		(단위:			
7.0	2015		~ 20	16,12,31	2017			2017	1, 1, ~	2020, 12	2.31.	2021.	1. 1. ~			
구 분	판단에가	소집 운반비	판매	제3회(3년 일순소로)	मुन्ति य	한 학생	구분	[10] 기	삭제).	판매 이윤	<u>(삭제)</u>	판매가	판매 이윤			
20 €	1,840	538	110	S 50 5	2,04		200	2,040	삭제)	122	(삭제)	2,040	184			
50 ℓ	4,590	1,343	275	2,972	5, 10	0 306	50 €	5,100	-1-1000	306	300 t 1000	5,100	459			

제2799호 49-45 2021. 1. 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및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필요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인상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청 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재사용, 특수종량제용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판매수수료 인상
- 나. 종량제봉투 규격 삭제 및 신설

제2799호 49-46 2021. 1. 4.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32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99호 49-47 2021. 1. 4.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 (제5조 관련)

1. 일반가정(단독주택)

(단위 : 원)

	2	2017. 1. 1. \sim 202	0.12.31.	2021. 1. 1. ~					
구 분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¹⁾ (92%)	판매 수수 료 ²⁾ (8%)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1%)	판매수수료 (9%)			
1 ℓ	100	92	8	100	91	9			
2 ℓ	200	184	16	200	182	18			
3 ℓ	300	276	24	300	273	27			
5 l	500	460	40	500	455	45			

2. 일반가정(공동주택)

(단위 : 원)

		2016년		2017. 1. 1. ~					
구 분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00%)	판매수수료 (0%)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00%)	판매수수료 (0%)			
120 ℓ	8,400	8,400	0	12,000	12,000	0			
200 ℓ	14,000	0 14,000 0		20,000	20,000	0			

3. 소형음식점(사업장)

(단위 : 원)

		2016년		2017. 1. 1. ~						
구 분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4%)	판메수수료 (6%)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u>수수</u> 료 (94%)	판매수수료 (6%)				
5 ℓ	500	470	30	700	658	42				
10 ℓ	1,000	940	60	1,400	1,316	84				
20 ℓ	2,000	1,880	120	2,800	2,632	168				
25 ℓ	2,500	2,350	150	3,500	3,290	210				
40 ℓ	4,000	3,760	240	5,600	5,264	336				
60 ℓ	6,000	5,640	360	8,400	7,896	504				
120 ℓ	12,000	11,280	720	16,800	15,792	1,008				

- ※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판매수수료는 판매가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1)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 (조례 제9조의1)
- 2) 판매수수료 : 종당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판매자 수입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2799호 49-48 2021. 1. 4.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H	별표 3 음식물류 폐가물 수수료 구성내역(제5조 관련)									효 구성내역(제5조 관련)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제5조 관련)									
1	1. 일반가정(단독주택)									일반가정(단독주택) 1. 일반가정(단독주택)									
١.						(단위: 원))									(단역	의: 원)		
	구		<u>2016년</u>		<u>2017. 1. 1. ∼</u>				, H	20	17. 1	. 1. ~	202	0.12.3	<u>11.</u>	<u>202</u>	1, 1,	<u>1. ~</u>	
	분	판매가 (10 0%)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92%)	<u>판매수수</u> 료 (8%)	<u>판매가</u> (100%)	수집·운반· 처리수수 <u>로</u> (92%)	<u>판매수수</u> 료 (8%)		구 분	판매가 (10 0%)	<u>(삭제)</u>	선급원년 <u>추구수료</u> (92%)	<u>(삭제)</u>	<u>판매</u> 수수료 (8%)	<u>(삭제)</u>	<u>판매가</u> (10 <u>0%)</u>	설문 차주수 로 (91%)	<u>판매수수</u> 료 (<u>9%)</u>	
	1 ℓ	<u>70</u>	<u>64</u>	<u>6</u>	100	<u>92</u>	8		1 ℓ	100		<u>92</u>	<u>8</u> <u>16</u>	<u>8</u>		<u>100</u>	<u>91</u>	<u>9</u>	
	2 ℓ	<u>140</u>	129	<u>11</u>	200	<u>184</u>	<u>16</u>		2 ℓ	200	(삭제)	<u>184</u>		<u>16</u>	- (삭제)	<u>200</u>	<u>182</u>	<u>18</u>	
	3 ℓ	<u>210</u>	<u>193</u>	<u>17</u>	300	<u>276</u>	<u>24</u>		3 ℓ	300	<u>(각제)</u>	<u>276</u>	(삭제)	<u>24</u>		<u>300</u>	<u>273</u>	<u>27</u>	
	5 l	<u>350</u>	322	<u>28</u>	<u>500</u>	<u>460</u>	<u>40</u>		5ℓ	<u>500</u>		<u>460</u>		<u>40</u>		<u>500</u>	<u>455</u>	<u>45</u>	

제2799호 49-49 2021. 1. 4.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및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필요에 따라 우리 구 규칙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판매수수료 인상
 - 봉투판매이윤을 봉투가격의 8%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가의 9%로 변경